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 김태수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('26.2.27.) 사항을 고려하여, 시통합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-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통합심의위원회의 분야별 위원 위촉위원 수 기준을 현행 “이상”에서 “내외”로 변경하고,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-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